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53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정희용·고동진·김용태

배준영 • 박준태 • 김선교

유용원 • 박충권 • 김형동

임종득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영업장 977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러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지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안정자금, 복구비,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 공인의 경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9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9(재해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제2070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제12조의9(재해로 인한 피해 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
	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지
	원,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
	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